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72
----------	-----------

제안년월일 : 2023년 6월 19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제8조제2항의 노인실태조사를 제1항의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현황 및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제1항의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로 문구 수정함. (안 제8조2항)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실시 할 수 있으며”를 “제1항의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노인건강실태조사) ① (생   략)	제8조(노인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제8조(노인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현황 및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u>실시할</u> <u>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u> <u>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u>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현황 및 생활 여건 등에 관 한 실태조사를 <u>제1항의 노</u> <u>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u> <u>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u> <u>며,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u> <u>위탁할 수 있다.</u>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양의무자와 동거하지 않고 홀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

제8조의 제목 “(노인건강실태조사)”를 “(노인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현황 및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제1항의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의2제1항 중 “취하여야 한다.”를 “취해야 하며,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심리.정서지원사업
2. 홀로 사는 노인 사회참여사업
3. 홀로 사는 노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4.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제3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u>&lt;신설&gt;</u></p> <p>3. ~ 5. (생략)</p> <p>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u>&lt;신설&gt;</u></p> <p>6. (생략)</p> <p>② (생략)</p> <p>제8조(<u>노인건강실태조사</u>) ① (생략)</p> <p><u>&lt;신설&gt;</u></p>	<p>제3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양의 무자와 동거하지 않고 홀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u></p> <p>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u>노인실태조사</u>)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현황 및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제1항의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할</u></p>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②·③ (생략)

제30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제18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  
-----  
-----

----- 취해야 하며,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 심리.정서지원사업
2. 홀로 사는 노인 사회참여사업
3. 홀로 사는 노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4.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 3. (생략)

<신설>

4.·5.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4.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